■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53-186.
http://doi.org/10.17948/kcs.2022..97.153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성격 변화

박현순(朴賢淳)*

목 차

1. 머리말
2. 식년문과의 채점・선발법
3. 16세기 초장 강경 합격자의 감소와 '명경급제(明經及第)'
4. 17세기 강경 고득점자의 증가와 명경과(明經科)로의 성격 변화
5.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은 개국 초에 고려의 제술업을 개편하여 제술과 강경을 함께 시험하는 특유의 식년문과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숙종대에 이르면 문과가 강경 위주의 명경과(明經科)와 제술 위주의 제술과(製述科)로 이원화되고, 식년문과는 명경과로 인식되며, 평가절하되었다. 이 연구는 왜 식년문과가 조선 초기의 구상과 달리 명경과로 변화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였다.

식년문과 회시는 세 장의 성적을 합산하는 통고(通考)의 채점법을 따르지만 초장 강경을 통과해야만 중장・종장의 제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장 강경이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녔다. 그런데, 중종대 이후 초장 강경 시험 통과자가 30-40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강경 시험 통과가 곧 문과 급제로 이어졌다. 그리고, 강경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제술성적과 상관없이 급제를 인정하는 관행도 나타났다.

인조대 후반부터는 16세기와 달리 강경고득점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고득점자의 급제를 인정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식년문과 급제자의 대부분이 강경 고득점자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채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늦어도 숙종 34년 이전에 아예 강경으로만 31-32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2명을 제술 시험으로 선발하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식년문과는 명경과로 인식되고, 문과는 명경과와 제술과로 이원화되었다.

유생들은 명경과와 제술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준비하였는데, 명경과보다는 제술과를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식년문과의 위상은 갈수록 낮아졌고, 영조대와 정조대에는 제술생들의 강경 교육 문제가 교육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주제어: 문과, 식년문과, 식년시, 명경과, 제술과, 강경, 생획(生畫).

1. 머리말

조선은 개국 초에 고려의 제술업을 개편하여 식년문과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험의 내용 면에서 보자면 전적으로 제술로 구성된 제술업과 달리 강경(講經)을 도입한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그 결과 제술과 강경을 함께 시험하는 특유의 식년문과제도가 만들어졌다.[1] 식년문과는 조선 문과제도의 근간을 이루며 고종 32년(1894)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거의 빠짐없이 시행되었다.[2]

그런데, 식년시를 중심으로 입안되었던 문과제도의 운영은 당초의 구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세조대 즈음부터 별시가 늘어나면서 점차 문과의 중심이 식년시에서 별시로 옮겨갔다. 그리고 숙종대에 이르면 문과가 명경과(明經科)와 제술과(製述科)로 이원화되어, 강경을 시행하는 식년문과는 명경과, 제술만 시행하는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등의 별시류 문과는 제술과로 분류되었다. 그 가운데 명경과, 곧 식년문과는 향유(鄕儒)들이 경서의 단순한 암송으로 급제하는 시험으로 평가되며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숙종대 이후 식년문과는 인재 선발의

1) 식년문과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曺佐鎬, 「李朝式年文科考(上)」, 『大東文化硏究』 1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5, 173-196면; 「李朝式年文科考(下)」, 『大東文化硏究』 1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6, 33-56면(이상 조좌호, 『韓國科擧制度史硏究』, 범우사, 1996 수록); 김경용, 「조선조 과거제도 시행과정의 탐색—식년시 문과와 생진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5(1), 교육사학회, 2015, 1-47면,

2) 식년문과는 세조 2년(1456), 선조 27년(1594)과 30년(1597), 인조 14년(1636) 등 네 차례는 시행되지 못했다. 『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11655-v.1-12)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조종(祖宗)의 제도이자, 향유(鄕儒)들의 급제 통로가 된다는 명분으로 폐지하지도 못하는 다분히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었다.[3)]

이 연구는 왜 조선 초기의 구상과 달리 식년문과가 '명경과(明經科)'로 인식되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조선후기에 식년문과가 '명경과(明經科)'로 인식되는 양상은 일찍이 조좌호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조좌호는 중종대의 합격 정원 미달 사례를 통해 회시 초장의 강경이 당락의 관건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숙종・정조대의 사례를 통해 초장의 강경 성적으로 급제자의 대부분을 선발하면서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였다.[4)] 필자는 숙종대 이후 문과가 명경과와 제술과로 이원화되는 경향을 검토하면서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인식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5)]

식년문과는 강경과 제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이념을 표방하였고,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변화한 것은 조선 후기 과거제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연구 역시 이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자 선행 연구를 기초로 조선전기부터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인식되는 숙종대까지의 양상을 보다 계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명경과'라는 용어는 멀리는 중국 당대의 명경과(明經科), 고려의 명경업(明經業), 가까이는 『경국대전』에 수록된 '명경시(明經試)'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시험들은 문장(文章)이 아닌 경학(經學) 위주 시험이기도 하지만 경학의 시험 방식이 제술이 아닌 첩경(帖經)이나 묵의(墨義), 강경(講經) 등 경서의 암송 정도를 평가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서는 늘 문장을 제술하는 진사과(進士科), 제술업(製述業) 등이 중심을 차지하였고, 경서의 암송에 초점을 맞춘 명경과, 명경업, 명경시는 보다 수준이 낮은 시험으로 평가되어 왔다.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일컬어진 데에는 이런 두 가지, 곧 식년문과가 경서의 암송 위주 시험이며, 제술 위주의 별시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

3)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科擧)』, 소명출판, 2014, 134-138면, 277-285면.
4) 曺佐鎬, 앞의 글, 1976, 32-36면.
5) 박현순, 앞의 책, 2014.

'명경과'라는 용어 자체는 조선전기부터 등장한다. 우선 『경국대전』에 수록된 '명경시(明經試)'도 '명경과'라고 일컬었다. '명경시'는 성종 7년에 제도화되었는데, 식년문과의 일부로 초시·회시를 강경으로만 평가하였다. 또 세조, 성종, 중종 때는 별시로 강경만 시험하는 '명경과'를 시행한 적도 있었다.[6] 이처럼 조선전기의 명경시나 명경과는 오로지 강경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명경시나 명경과는 실제 시행사례가 드물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명경시는 식년문과의 일부로 별도의 선발정원없이 자원자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였고, 별시로서의 명경과도 서너차례 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명경시나 명경과가 제도로서 실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식년문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초시는 제술로만 시행하며, 회시도 초장에는 강경을 시행하지만 중장·종장은 제술로 평가하였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는 식년문과가 '명경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조선초기 강경과 제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식년문과제도를 입안할 때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이었다.

이 글에서는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지칭되게 된 경위를 식년문과 회시의 운영방식, 구체적으로는 채점과 선발법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식년문과의 채점·선발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실제의 운영 방식을 검토하였다.

2. 식년문과의 채점·선발법

조선의 문과제도는 고려의 제술업에 기초하여 입안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도 있었다. 3년마다 시험을 시행하는 식년제도, 초시·전시제도, 강경(講經) 시험, 삼장통고(通考通考)의 채점 방식 도입 등은 조선건국 후의 중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로 지적되는 것은 경학의 시험방식으로 구술시험인 강경(講經)을 도입한 것이다.

---

6) 『經國大典』 禮典 諸科 文科初試 "明經試 四書五經 館漢城鄕試 則上項九書通略以上者 取之 覆試 則九書中七通二略者 取之 殿試 則製述等第三十三人內 取之";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6월 27일(임신); 『성종실록』 권98, 성종 9년 11월 24일(신사);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5월 6일(무진)

중국 북송대 왕안석이 경학(經學)에 대한 제술시험인 경의(經義)를 도입한 이래 중국에서는 대대로 경의로 경학을 평가하였다. 주자학을 수용한 원대에는 사서(四書)에 대한 제술시험과목인 사서의(四書義)를 도입하였다. 이후 명・청대에도 경학시험은 계속 사서의(四書義)와 오경의(五經義)로 평가하였다.

고려에서도 중엽 이후에는 송의 제도를 수용하여 육경의(六經義)를 시험과목으로 도입하였고, 뒤에는 원의 제도를 따라 사서의(四書疑)도 채택하였다. 고려말의 제술업에는 육경의(六經義) 혹은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로 경학을 평가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었다.[7]

그런데, 조선에서는 송대 이래의 전통적인 제술 방식을 버리고 강경(講經)이라는 구술방식을 채택하였다. 과거(科擧)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선택이었다. 그 유래를 따지자면 고려 명경업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의 명경업은 『주역』과 『상서』로 전공[徧業]을 나누어 시행하였다.[8] 이와 달리 조선의 식년문과는 모든 응시자가 사서오경(四書五經) 전 과목을 배송(背誦)한다는 상당히 야심찬 기획이었다. 고려나 중국에서는 제술시험인 경의(經義)의 경우에도 한 서적을 선택하는 업경(業經) 혹은 전경(專經)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서오경(四書五經)의 배송은 상당히 파격적인 방식이었다.

강경의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과 시행착오가 따랐다. 그 결과 태종・세종대에는 강경을 제술로 대신하여 제도를 개편하기도 하였고, 세종 25년 강경제도를 완전히 복구한 후에도 세조대까지는 한동안 강경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경국대전』의 편찬과정에서 초장의 경학 시험 방식을 초시는 사서의(四書疑)・오경의(五經義) 제술, 회시는 사서삼경(四書三經) 강경이라는 절충적인 방식으로 식년문과제도가 완성되었다.[9] 이중 초시의 오경의

7)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129면 〈표1〉 및 131-132면; 박용운,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연구』, 일지사, 1990, 250-257면.
8) 허흥식, 앞의 책, 2005, 143-146면.
9) 朴天圭, 「文科 初場 講製是非考-鮮初 科擧制度의 成立過程에 관한 一考察」, 『東洋學』 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6, 101-125면; 박연호, 「조선초기 교육의 목표와 講製是非」, 『교육사학연구』 4, 교육사학회, 1992, 49-74면.

제술은 중간에 폐지되었으나 법제상 초시 초장 제술, 회시 초장 강경이라는 제도는 고종 32년(1894)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채점・선발제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고려의 삼장연권법(三場連券法)과 달리 삼장통고법(三場通考法)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삼장연권법이란 초장, 중장, 종장이 각각 1차, 2차, 3차 시험의 성격을 지녀서 초장에 합격해야 중장에, 중장에 합격해야 종장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종적으로 종장에서 합격자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장에 어떤 과목을 배치할지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10] 이에 대해 삼장통고법이란 세 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의 선발법이다. 모든 응시자가 초장, 중장, 종장에 응시한 후 세 장(場)의 시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조선에서는 태조가 즉위 직후에 반포한 교서에서 삼장통고법을 시행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이로부터 삼장통고법이 선발의 일차적인 원칙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다. 즉위 직후 태조가 반포한 교서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通)한 경서의 다소와 이해의 수준으로 고하를 매기고 제1장(場)으로 삼는다.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에 보낸다.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로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삼고, 책문(策問)으로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삼는다. 삼장(三場)을 통고(通考)하여 입격한 사람 33명을 이조(吏曹)에 보내 재주를 헤아려 탁용한다.[11]

즉위 교서를 내릴 당시는 아직 초시와 전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는 고려 제술업의 예부시(禮部試)와 같이 초장・중장・종장 3장의 시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시험절차는 초장의 사서오경(四書五經) 강경에 합격한 자를 중장・종장에서 제술로 시험하고, 세 장을 통고(通考)하여 33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식은 세 장(場)을 종합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삼장통고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초장의 강경시험에 합격해야만 중장・종장의

---

10) 박용운, 앞의 책, 1990, 253-256면.

11)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以其通經多少 見理精粗 第其高下爲第一場 入格者送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爲中場 試策問爲終場 通三場相考 入格者三十三人 送于吏曹 量才擢用"

제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다. 초장과 중장・종장 사이에 연권법(連卷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사실상 초장의 강경 통과 여부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던 셈이다.

조선의 문과제도는 태조 4년(1395)에 비로소 입안되어 그 이듬해인 태조 5년부터 적용되었다. 이 법안은 『경제육전』에 수록되었는데, 현재 이 책은 전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세종실록』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오・묘・유년(子午卯酉年)이 되면 성균관이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는 국왕께 계문(啓聞)하여 성균관・한성부・외방의 각도 관찰사가 위의 사서오경(四書五經)에 통(通)한 자를 전에 정한 인원대로 선발한다. 사서 각 1장을 강하고, 오경 각 1장을 강하는 것이 초장이 되고, 표・논・고부 중에 한 글제를 출제하는 것이 중장(中場)이 되고, 경사(經史)와 시무(時務) 중에 책문을 출제하는 것이 종장이 된다. 통고(通考)하여 고하를 매기고, 합격한 자는 회시(會試)에 응시하게 하는데, 선발하는 방법은 앞와 같다. 33인을 취하여 전시에 나아가게 하고 다시 책문 1도(道)를 시험하여 고하를 매긴다.[12]

이 때는 초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초시와 회시의 시험 방식은 같았다. 초장에서는 강경, 중장・종장에서는 제술을 시험하고, 3장을 통고(通考)하여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이 방식은 즉위교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위 교서에서는 초장의 강경시험에 합격해야만 중장과 종장의 제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경제육전』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러나 『경제육전』에 따라 강경을 복구한 태종 17년(1417)에 마련한 과거법(科擧法)과 문과 복시 시행 사례를 보면 초장의 강경을 통과해야만 중장과 종장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이 내용이 『경국대전』에는 "강서(講書)는 조(粗) 이상을 취한다"는 내용으로 수록되어

---

12) 『세종실록』 권69, 세종 17년 9월 27일(을미) "知成均館事許稠等上疏曰 謹按經濟元典 (…) 至子午卯酉年 成均館報禮曹 禮曹啓聞 令成均館漢城府外方各道監司 將上項通四書五經者 以前定額數試取 四書各講一章 五經各講一章爲初場 表論古賦中出一題爲中場 經史時務中出策問爲終場 通考第其高下 其中者 許令入赴會試 試取如前例 取三十三人赴殿試 更試策問一道 第其高下"

13)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3월 26일(임자) "命通三經四書者 許赴會試中終場";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기사) "禮曹上科擧之法 一 (…) 初場講問之時 每經書各問一章 (…) 其有二章不通者 不許入赴中場 會試講問之法 亦依此例"

있다.[14] 조(粗) 이상만을 취한다는 것은 7서에서 모두 조(粗)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만 강경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후 150여년이 지난 선조 즉위년(1567) 이준경(李浚慶)은 중국 사신 허국(許國)과 조선의 과거제에 대해 필담을 나눈 적이 있다. 그 가운데 조선의 문과 회시는 초장의 사서오경(四書五經) 강경을 통과해야만 중장·종장에 응시할 수 있고, 통고(通考)의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이 있다.[15]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제시된 방법은 『경제육전』에서는 누락되어 있지만 계속 유효했던 것이다.

태종 17년 강경을 복구한 후에는 강경과 제술의 등급과 분수(分數) 환산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16] 그 후 세종 10년에 강경을 폐지하였다가 세종 25년에 복구하면서 다시 정식을 마련하였고,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다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17] 그 사이 초장·중장·종장의 배점은 계속 바뀌었다. 초장의 경학 시험을 강경으로 할지 제술로 할지 논란을 하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강경의 배점은 낮아지고, 제술의 배점은 높아졌다.[18]

하지만 강경과 제술에 각각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을 분수로 환산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여기에서 추론되는 삼장통고의 방식은 세 장의 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문과 회시의 채점·선발 방식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초장 강경에서 사서삼경을 강하여 모두 조(粗)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중장·종장의 제술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초장 강경과 중장·종장의 제술에서 받은 등급을 분수로 환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분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 거관 일수가 많은 자를

14) 『經國大典』 禮典 諸科 講書 "通二分 略一分 粗半分 (…) ○凡講 取粗以上"
15) 李浚慶, 『東皐遺稿』 권5, 「錄遺 許太史-國-朝鮮風俗」 "會試則初場講四書五經 能通者許赴中場 試賦表記中二篇 終場策問 通考取之"
16)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기사)
17)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2월 3일(계미); 『經國大典』 禮典 諸科 製述 "初場講則五經四書俱通者 終場上之上者 給十八分 中場俱上之上者 二十七分"
18) 강경과 제술의 배점을 보면 태종 17년은 초장 강경 31분 5리, 제술 23분 5리(중장 10분, 종장 13분 5리), 세종 25년은 초장 강경 31분 5리, 제술 36분(중장 18분, 종장 18분), 『경국대전』은 초장 강경 18분, 제술 45분(중장 27분, 종장 제술 18분)이다.

선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다.[19] 이 방식의 시험은 초장의 강경 시험이 응시자격시험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강경(講經) 능력을 기본 전제로 제술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이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3. 16세기 초장 강경 합격자의 감소와 '명경급제(明經及第)'

강경시험은 당초에는 사서오경을 모두 시험하였으나 태종 17년에는 사서사경, 세종 25년에는 사서삼경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경서는 자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기준이 너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강경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20]

강경의 평가 기준은 세종 때에 구두(句讀), 훈석(訓釋), 문의(文義) 강론(講論) 세 단계로 정했다. 일단 암송과 해석에 오류가 없어야 강론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고, 문의(文義)에 대한 강론의 수준에 따라 조, 약, 통의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였다.[21]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22]

강경의 성적을 매길 때는 시관들이 각자 강첨(講籤)으로 통(通), 약(略), 조(粗)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종합하여 가장 많은 쪽을 따라 등급이 정해졌다. 가령 7명이 부여한 등급이 통(通) 3명, 약(略) 2명, 조(粗) 2명이라면 최종 등급은 통(通)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통(通) 3명, 약(略) 3명, 조(粗) 1명과 같이 최고 성적과 하위 성적이 동수인 경우 낮은 쪽인 약(略)으로 최종 등급을 부여하였다.[23] 이렇게 하여 7과목의 등급이 정해지면 통은 2분, 약은 1분, 조는 반분으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였다. 이 점수가 초장의 강경 분수(分數)가 된다. 원래 7과목에서 모두 통을 받으면 14분이 되지만 성종 24년부터 『주역(周易)』은 분수를 2배로 계산했기 때문에 최고점은 16분이 된다.[24] 초장의 합격 기준은 전 과목 조(粗) 이상으로 6과목에서 전부 통을 받더라도 1과목이 불통이면 중장에 응시할 수

19) 『經國大典』 禮典 諸科 額數 "分數同 則文科 取居館日多者"
20) 정지연, 「조선 초기 문과 강경과목 연구」, 『교육사학연구』 20, 교육사학회, 2010, 83-109면.
21)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9일(기축)
22) 『經國大典』 禮典 諸科 講書 "句讀訓釋 皆不差誤 講論雖未該通 不失一章大旨者 爲粗 句讀訓釋 皆分明 雖通大旨 未至融貫者 爲略 句讀訓釋 皆精熟融貫 旨趣辨說無疑者 爲通"
23) 『經國大典』 禮典 諸科 講書 "講籤從多 相等從下"
24) 『성종실록』 권277, 성종 24년 5월 5일(무진)

없었다. 전과목에서 조를 받은 경우의 분수는 4분이었다. 즉, 강경합격자들의 성적은 통상적으로 4분에서 16분 사이에 분포하였다. 시험 과정에서는 확인을 위하여 강경의 성적을 적는 강지(講紙)에 강경 점수를 합산한 분수를 기재하고, 중장·종장의 제술 시권에도 강경 분수를 기재하였다.[25]

강경 성적은 통·약·조로 구분되었지만 실제 시험 과정에서는 불통(不通)을 받고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가령 세종 1년 세종의 즉위 기념별시는 식년문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초장에 강경을 시행하였는데, 한성시 응시자 70여 명 가운데 합격자는 43명이었다. 문종과 단종의 즉위를 기념한 별시에서는 초시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전시 때 4서 1경을 강서하였는데, 합격자는 각각 70명과 50명이었다.[26] 확인되는 사례를 통해 보면 최소 30% 정도가 강경 시험에서 탈락했던 셈이다.

선조 6년(1573) 2월 유희춘(柳希春)은 식년시 문과 회시 강경 1소의 감시관(監試官)이 되었다. 이 시험에는 초시 합격자와 이에 준하는 직부회시자(直赴會試者) 등 240명가량이 3개의 시소로 나뉘어 응시하였다. 1소에서는 80명가량이 응시하였는데, 조(粗) 이상의 성적으로 강경을 통과한 인원은 11명이었다. 성적은 16분 1명, 12분 2명, 11분 2명, 9분 반 1명, 6분 반 1명, 6분 2명, 4분 2명이었다. 다른 시험장의 경우도 비슷하여 2소에서는 14명, 3소에서는 10명이 합격하였다. 240명가량의 강경 응시자 가운데 통과자는 35명에 불과하였다. 회시 선발 인원이 33명이었기 때문에 중장·종장의 제술시험을 거쳐 회시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희춘은 안도하였다. 앞서 중종 29년(1534)과 중종 32년(1537)에는 강경 합격자가 회시 선발인원인 33명을 채우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27] 두 해의 식년문과 합격자 수는 각각 26명과 27명이

25)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윤3월 25일(임인) "又啓曰 (…) 往在辛酉年間 講經會試擧子中 有一試卷 而姓名年歲 刀擦 仍不書塡 只書其講經十五分及其父名 故以此憑考講紙 知其爲朱恒道". 강지(講紙)의 분수 기재 방식에 대해서는 金敬容, 「조선조 과거제도 講書試券 연구」,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50-64면 참조.

26)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3월 6일(경술); 『문종실록』 권7, 문종 1년 4월 7일(을해);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 4월 12일(기해)

27) 柳希春, 『眉巖日記』 제8책 63면, 癸酉(1573) 2월 29일 "凡講幾八十人 得十一人入格 幼學李璣十六分 生員邊以中十二分 幼學姜先慶十二分 進士劉德蓋金復慶 並十一分 生員李珙九分半 別提權寔六分半 進士成泳

었다. 유희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종 14년(1519)에도 문과 합격자는 28명에 그쳤다.[28] 그 3년 전인 중종 11년(1516)에는 그나마 33명을 뽑기는 했지만 강경 합격자는 37명에 지나지 않았다.[29] 중종대에는 초장 강경 합격자 수가 회시의 선발인원에 못미치거나 약간 웃도는 정도의 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다.

중종 33년 신광한(申光漢)은 자신이 합격했던 중종 5년(1510)의 경우 강경 통과자가 100여 인이었고, 강경점수 15분을 받고도 회시에 낙방한 경우가 5-6명이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30] 중종 34년 예조판서 이구령(李龜齡)은 유숭조(柳崇祖)가 대사성으로 있던 중종 초반에는 14분으로 탈락한 자가 있었다고 전했다.[31] 강경에서 고득점을 하고도 탈락한 경우는 강경 합격자가 많아 중장·종장의 제술 성적으로 당락이 판가름난 경우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강경합격자가 줄어든 것은 중종대부터의 일로 보인다.

강경 합격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된 것은 별시를 자주 시행하여 유생들이 경서(經書)를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종 13년 대사관 방유녕(方有寧)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대사간 방)유녕이 말하기를 "금년에 강경에 합격한 수가 매우 적습니다. 실로 실학(實學)에 힘쓰지 않은 탓입니다. 요사이 자주 별시를 시행하고 모두 강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갓 음풍농월하는 글을 숭상하고 실학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였다.[32]

六分 幼學權可行六分 生員申景龍四分 訓導河弘秀四分 (…) ○余常恐式年會講之數未充而其榜不完 今者 一所得十一人 三所得十四人 二所得十人 而尙未畢 無患乎甲午丁酉之欠缺也"

28)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3월 13일(병오) "臺諫啓曰 今之講者 只二十八人 不足於三十三人之數 此近古所無"; 조좌호, 앞의 글, 1976, 33면.

29)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3월 15일(무신) "上臨文曰 (…) 而去式年講經之數 只三十七人 而今年反不充其額 何歟"

30)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10월 23일(계해) "大司諫申光漢曰 臣登科之時 講經入格者 百有餘人 而得十五分 而未得登科者 五六人 十三四分 則甚多也"

31)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 8월 4일(무진) "龜齡曰 臣爲儒時 柳崇祖爲大司成 勤於訓誨 故人才成就者多 其時講經 至有以十四分落第者"

32)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30일(경술) "有寧曰 今歲講經 與選者甚少 良由不務實學也 近年屢爲別試 皆不講經 故徒尙風雲月露之文 不務實學"

별시는 태종대부터 등장하기는 하지만 세조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빈도가 늘어났다. 세조대에는 시험횟수면에서 식년문과를 넘어섰고, 중종대에는 선발 인원 면에서도 식년문과를 넘어섰다. 이때를 기점으로 문과의 중심이 별시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유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경을 하는 식년문과 외에 강경을 하지 않는 별시라는 선택지가 있었다. 비록 별시에도 강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실제 별시에 강경을 도입한 사례도 있으나 별시 강경은 4서와 자원 1경으로 식년문과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았다.[33] 따라서 별시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강경에 소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당시의 사관(史官)은 강경의 평가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사신은 말한다. "유녕이 강경에 대해 말한 것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오늘날의 강학(講學)이라는 것은 진실로 의리를 강구하여 그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뜻도 모르면서 한갓 구송(口誦)하는 것일 뿐이다. 금년의 강경은 시관(試官)이 된 자들이 힘써 잘 외는 자를 취하고 다시 그 뜻을 묻지 않았으며 외면서 몇 글자만 틀려도 곧 못한다고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뽑은 자들이 더욱 적고 뽑힌 자들은 부유(腐儒)가 많았다."[34]

사관은 강경의 평가 방식이 구송(口誦) 위주라고 비판하면서 이해에는 특히 시관들이 평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몇 글자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자가 적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해에는 특히 구송(口誦)의 평가 기준이 높았던 셈이다.

중종 14년 신용개는 합격자 미달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전에는 유생들이 한갓 구두(口讀)만 외워도 강경 때 으레 통(通)을 주었으나 지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모두 깊은 뜻을 찾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독서를 폐하게 되니 실로 두 가지를 잃는 셈입니다. 그 중에는 잘 외지만 구두(句讀)를 익히는

33) 차미희, 『朝鮮時代文科制度硏究』, 1999, 71-73면.

34)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30일(경술) "史臣曰 有寧講經之言 固是也 然今之講學者 非實究義理以探其旨 不曉其義 而徒爲口誦 今歲講經爲試官者 務取能誦者 不復問其旨趣 誦或蹉數字 則便謂不能而不取以此 其所取者尤少 而見取者 多是腐儒"

것을 싫어하여 강하지 않고 물러나는 자도 많습니다."[35]

신용개의 주장은 사관과는 자못 다르다. 사관은 구송(口誦) 위주의 평가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신용개는 오히려 문의를 위주로 평가하려고 하여 강경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였다. 이전에는 구송(口誦)만 제대로 해도 통(通)을 주었으나 지금은 문의를 따져 불통(不通)을 준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기묘사림들이 문의를 위주로 강경을 시행하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중종 14년의 상황은 기묘사림들의 강경 강화책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36] 그러나 강경 합격자의 미달 상황은 그 이후에도 되풀이되었다. 이 문제가 단지 한때의 일시적인 사건은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용개가 구두(句讀), 곧 현토(懸吐)의 문제를 제기한 점이 주목된다.[37] 경서를 익히기 위한 방편으로 토를 달아 익히는 방식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정몽주(鄭夢周)와 권근(權近)의 현토(懸吐)가 통용되었지만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여 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세종 26년에 마련한 강경절목에는 구두(句讀)가 평가의 주요 요소이기는 하지만 문의(文義)만 통한다면 개인별로 다른 구두나 해석도 용인하도록 하였다.[38] 그 후 세조 때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현토를 완성하여 간행하였고, 중종대 초반 대사성을 지낸 유숭조(柳崇祖)는 7서를 언해했던 것으로 전한다.[39] 유희춘도 유숭조 등의 선인들이 수행한 현토를 높이 평가하였다.[40] 이런 과정을 보면 당시에는 어느 정도 현토(懸吐)의 표준이 설정되면서 현토의 정확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논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생들이 강경을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강경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중종대 들어 강경 합격자가 선발인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

35)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3월 15일(무신) "領事申用漑曰 前此儒生等 徒誦口讀 至講經時 例許爲通 今以謂不可 皆欲尋繹蘊奧 而反廢讀書 是謂兩失 其間雖有能誦者 嫌於袒治句讀 不講而自退者 多矣"
36) 기묘사림들의 식년문과 강경 강화책에 대해서는 차미희, 앞의 책, 1999, 76-78면 참조.
37)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18일(기해) "凡讀書 以諺語節句讀者 俗謂之吐"
38)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9일(기축) "禮曹啓文科講經節目 (…) 一 聖賢之書 義理無窮 故學者所傳或異 試官等當講經時 生徒句讀及釋義 或異於己 指爲不通者有之 今後生徒所見雖異 文義皆通 則試官等勿拘己見 以從衆議"
39) 강민구, 「조선 시대의 懸吐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85, 동방한문학회, 2020, 12-14면.
40) 『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10월 25일(병인)

명종 7년(1552) 이조판서 송세형(宋世珩)에 따르면 식년시 회시 응시자 300여 명 가운데 강경 합격자는 통상적으로 30-40명에 불과하였다.[41] 중종대의 상황이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선조 초반 유희춘이 강경 합격자 미달을 우려한 것을 보면 선조대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듯하다.

결과적으로 초장의 강경시험만 통과하면 제술성적의 고하와 상관없이 급제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선조 6년(1573) 유희춘은 당시 강경 합격자가 적자 3분 반으로도 급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3분 반이란 7서에서 조(粗)를 받는다는 의미로 강경을 통과하기만 하면 급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42] 강경 합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이런 일이 가능하다.

또 강경 합격자가 30-40명 수준인 경우에도 탈락자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강경 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았다. 중종 14년 강경 합격자가 28명에 그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미 강경 성적만으로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되고 있다.[43] 이 이전에는 강경 합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는 다른 상황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세 장의 성적을 합산하는 선발방식과 관련시켜 이해해 볼 수 있다. 합산의 특성 상 초장 강경에서 고득점을 하는 경우 중장·종장의 제술에서 등외(等外)의 등급을 받아 전혀 분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총점이 더 높으면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조대 『승정원일기』에는 강경 합격자의 수와 상관없이 강경 성적으로만 합격한 실제 사례가 보인다. 먼저 인조 11년(1633) 이사우(李士瑀)는 중장·종장의 제술 시험에 백지를 제출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3장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합격이 인정되었다.[44] 인조 26년

41)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9월 2일(신사) "吏曹判書宋世珩啓曰 儒生之科擧 式年其赴講者 三百餘人 而入格者 不過三四十 別科則赴講者六百餘人 而入格者亦不過三四十 尙無過嚴略取之責"

42) 유희춘, 『미암일기』 제8책 62면, 계유 2월 28일 "終日試講 至三更三點 得四人入格 蓋二三所之講 今日亦罕入格 今年入會講者 雖三分半 亦得及第矣". 여기서는 3분반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7서 중 『주역』은 배획하기 때문에 실제 강경의 최저 점수는 4분이다. 유희춘의 채점 기록에도 최저 점수는 4분으로 확인된다.

43)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3월 13일(병오) "鄭光弼申用漑安瑭金安國禮曹判書李繼孟參議朴壕議啓曰 前此會試入格者 不必講經製述俱全者得與焉 只以講經分數得參者 亦有之"

44) 吳允謙, 『楸灘集』 권3, 「式年科場規式議 癸酉(1633)十一月」 "式年會試設三場 而初場講經 中場終場製

(1648) 김여원(金汝瑗)은 중장·종장의 제술 답안에 나이를 쓰지 않아 위격(違格)의 처분을 받았는데, 강경 성적이 15분이었기 때문에 강경 성적만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45]

그런데, 인조 26년의 논의에 따르면 당시 법전에는 '강경의 분수가 많으면 중장·종장에서 글을 짓지 못하거나 글을 지었지만 입격(入格)하지 못했더라도 강획(講畫)으로만 취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46] 이 규정은 현재 전하는 법전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언제 이 규정이 만들어졌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인조 11년 이사우의 사례 때 이와 관련된 논란이 처음 등장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례에 즈음하여 내린 수교(受敎)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3장의 성적을 합산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제술 성적에 상관없이 급제를 인정하던 관행을 수교화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 합격자가 백지를 제출한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자 기존의 관행에 입각하여 '글을 짓지 못한 경우'에도 합격을 인정한 것이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늦어도 인조대에는 강경 분수만으로도 급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강경 분수가 많은 경우'라는 단서가 있는데, 김여원을 급제시킨 것을 파격적인 조처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15분이라는 고득점이 그 근거가 되었던 듯하다. 숙종 7년 제술 시권에 이름을 쓰지 않아 위격(違格) 처분을 받은 주항도(朱恒道)도 강경 성적 15분을 근거로 합격을 인정받았다.[47] 두 사례를 위의 법제와 연결시켜 보면 강경 15분을 받으면 제술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급제시키는 것이 된다. 강경 15분은 곧 급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두 사람이 위격(違格)이라는 발거(拔去)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7세기 초반부터 '명경급제(明經及第)'라는 표현이 종종 보인다.

述 通計分數多少 等第出榜 例也 二場雖無所作 一場旣有分數 則從初場講經試卷出榜 恐無不可"

45)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10월 24일(을묘) "趙啓遠 以文科式年會試試官言啓曰 以禮曹擧子金汝瑗, 講書多至於十五分事 當有別樣變通之擧 (…) 傳曰 知道 畫數甚多 所違不關 罷格取之 可也事 傳敎矣"

46) 『인조실록』 권49, 인조 26년 10월 25일(병진) "禮曹覆啓曰 法典內 講經分數多者 中終場雖不製 或不入格 只以講劃取之 則金汝瑗講劃 多至十五分 當有變通之擧"

47)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1월 14일(계해)

중종대 즈음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이 지은 글에는 윤사익(尹思翼)이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48] 윤사익은 중종 9년(1514)에 실시한 명경별시에 급제하였다.[49] 이 때의 '명경과'는 명경별시를 가리킨다.

그런데, 17세기 초반에는 식년문과에 급제한 경우를 '명경급제', 식년문과를 '명경과'라고 칭한 경우들이 종종 보인다.

신흠(申欽, 1566-1628)의 문집에는 박응복(朴應福)과 이신충(李藎忠)이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한 것으로[50] 홍성민(洪聖民)은 '명경급제(明經及第)'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51] 이들은 모두 명종 19년(1564) 식년문과 급제자들이다. 최립(崔岦, 1539-1612),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글에도 같은 사례들이 보인다.[52] 이처럼 '명경급제'를 칭한 사례들은 모두 식년문과에 급제한 경우로, 17세기 초반에 식년문과 급제를 명경(明經)을 통한 급제로 인식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인조실록』에는 인조 2년(1624) 식년문과 전시에 대해 기술하면서 응시자들을 '명경거인(明經擧人)'이라고 기재하였다.[53] 이 말에는 전시 응시자들, 곧 회시 합격자들이 강경(講經)으로 선발되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때는 여전히 강경 합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시기로 회시 합격자의 대다수가 강경 합격자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식년문과 복시의 규정은 강경을 기본으로 하되 초장 강경과 중장·종장의 제술 성적을 합산하여 강경과 제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중종 초반 강경에서 14분·15분의 고득점을 하고도 낙방한 사례들은 제술 성적도 당락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48) 申光漢, 『企齋集』 권1, 「贈判書尹公神道碑銘」 "次曰思翼 登甲戌明經科"
49)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5월 6일(무진)
50) 申欽, 『象村稿』 권24, 「大司憲朴公夫人林氏合葬墓誌銘」 "甲子明經科"; 같은 책, 권28, 「貞夫人李氏行狀」 "考曰蓋忠 擢明經科"
51) 申欽, 『象村稿』 권23, 「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崇政大夫益城君洪公墓誌銘」 "甲子明經及第"
52) 崔岦, 『簡易集』 권2, 「議政府右參贊贈領議政李公神道碑銘」 "戊子 同兄夢尹明經及第"; 李恒福, 『白沙集』 권2, 「健元陵參奉李君墓誌銘」"其考曰夢尹 (…) 明經及第"; 李廷馣, 『四留齋集』 권12, 「延城大捷碑銘」 [李恒福] "二十一 明經及第"; 李恒福, 『白沙集』 권3, 「領府事尹公-承勳-墓表」 "癸酉 (…) 因以明經及第"
53)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1월 5일(을묘) "命右議政申欽 策試明經擧人于殿前 賜趙賛等三十三人及第"

보여준다. 그러나 중종대부터 강경 합격자가 선발인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제술 성적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로부터 식년문과의 성격이 명경과로 전환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졌다.

4. 17세기 강경 고득점자의 증가와 명경과(明經科)로의 성격 변화

1) 고득점자의 증가와 강경 평가 기준의 조정

중종대에 강경 합격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인조대 후반에는 강경 고득점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된다. 『인조실록』의 사관(史官)은 인조 초년에는 3분 반, 곧 평균 조통(粗通)의 성적으로도 급제할 수 있었지만 인조 27년(1649) 당시에는 10분이 넘어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54] 인조 초년의 상황은 유희춘이 강경 감시관이 되었던 선조 초반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강경 합격자가 선발인원과 비슷한 상황을 의미한다.[55] 이에 비해 합격 분수가 10분 이상으로 높아진 인조 27년의 상황은 강경 합격자가 늘어난 상황을 말한다.

이즈음의 강경 방식에 대해서는 인조 12년(1634) 예조판서였던 조익(趙翼)의 차자를 통해 그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거의 강경은 배강(背講)을 규칙으로 하는데 그 외는 것이 한자라도 틀리거나 토석(吐釋)이 당시의 인본(印本)과 다르면 모두 떨어뜨립니다. (…) 음토(音吐)가 입에 익기만을 추구할 뿐이며 늘 글자 하나 토(吐) 하나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니 그 뜻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56]

---

54) 『인조실록』 권50, 인조 27년 3월 18일(정축) "按 國家科制 三年大比 以四書三經背講 取其誦讀之慣習七書皆通 爲十六分 間以粗略 則或十餘分 或七八分 純粗則三分半矣 光海時私情大行 科制紊亂 人不習經傳故上之初年 有以三分半預選者 近年以來 赴講者漸衆 十餘分者或不得與焉". 사관은 7서가 모두 粗인 경우 분수가 3분 반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周易』을 배획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분이다.

55) 유희춘, 『미암일기』 8책 22면, 계유(1573, 선조 6) 2월 28일 "終日試講 至三更三點 得四人入格 蓋二三所之講 今日 亦罕入格 今年入會講者 雖三分半 亦得及第矣"

56) 『인조실록』 권29, 인조 12년 1월 23일(경술) "禮曹判書趙翼上箚曰 (…) 科擧講經 以背講爲規 其誦者有一字之差 與吐釋或有違於當時印本 則皆落之 (…) 只求音吐之熟於口而已 常恐一字一吐之有差 其何能及於意味乎"

조익은 구송(口誦) 중심의 평가 방식을 비판하며 문의(文義)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논의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인본(印本)을 기준으로 토석(吐釋)의 암송 여부를 평가한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조선 전기에는 세조대에 간행된 사서삼경의 현토본(懸吐本)이나 개인들이 편찬한 현토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인 선조 21년(1588)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의 언해가 완성되어 선조, 광해군, 인조대에 걸쳐 간행되었다. 위에서 현토와 해석의 기준이 된 인본(印本)이란 이 때 간행된 언해본을 말할 것이다.

선조 초반 유희춘이 사서삼경의 언해 사업을 관장하고 있을 때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은 토석(吐釋)을 정해 인출하면 강서를 할 때 표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7] 세종 26년 강경 절목을 마련할 때에 구두(句讀)를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하면서도 문의(文義)만 통한다면 개인별로 다른 구두나 해석도 용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58] 이는 당시에는 아직 여러 가지 토석(吐釋)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해본이 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익(趙翼)은 강경이 인본(印本)에 의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59]

그런데, 역으로 응시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해본의 간행이 시험 준비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었다. 언해본을 통해 현토(懸吐)와 해석의 표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언해본의 단순 암송만으로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소 과장된 수사이겠지만 언해본만 익혀서 문과에 급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서삼경(四書三經) 언해본의 간행이 강경 성적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60] 특히 인조대에 성적 급등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전의 판본보다 인조 9년(1631) 간행본이 널리 보급된

57) 유희춘, 『미암일기』 갑술(1574, 선조 7) 10월 13일 "盧公曰 聞上付公以四書經書吐釋之定 有諸 希春對曰 有之 盧公曰 文義不必致意 四方諸生 宜任其所讀 今若一定印出 講書之際 以是爲準 則人多冤落 況曲巧之說 非所以一衆學也"
58)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9일(기축)
59) 趙翼, 『浦渚集』 권24, 「道村雜錄」 上
60) 『승정원일기』 숙종 2년 4월 22일(갑술) "大運曰 自兒時 以諺文翻譯口之 以至決科者 亦有之";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9월 11일(갑술) "領府事金壽興曰 (…) 遐鄕鹵莽之人 或以諺文 自幼習讀 及至登科 不能爲書札酬應之文"; 柳壽垣, 『迂書』 권3, 「論官制推陞」 "今日文科出身之不足倚用也 以遐方治經及第言之 諺讀登科 擧止可笑"

듯하다. 민간에서는 이미 인조 14년(1637)에 이른바 가난한 선비들[寒士]을 위해 권수를 줄여 재편집한 언해본이 간행되어 있었다.[61] 그만큼 언해본이 민간의 호응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응시자의 증가로 인해 강경 고득점자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조대 이후에는 생원・진사시나 정시・알성시 문과의 응시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년문과나 증광문과의 응시자 수 증가는 미미하였다. 응시자 수가 추산되는 광해군 9년(1617) 식년문과의 응시는 약 2,000명이었는데, 73년 후인 숙종 16년(1690)의 응시자수는 약 2,400명이었다. 정시・알성시의 경우 인조대 2,000명 전후에서 숙종대 만 명 전후로 늘어난 것으로 언급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변화였다.[62]

인조 26년 당시 이조(吏曹)의 계사에 따르면 식년문과 초시의 응시자는 별시의 10분의 2-3정도로 이야기되고,[63] 숙종 12년 이단하는 이전에 비해 식년문과 응시자가 줄어 당시에는 수백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였다.[64] 이 발언들은 식년문과 응시자가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분히 과장한 것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 비해 식년문과는 응시자가 적었고, 다른 시험과 달리 그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식년문과의 응시자 수는 지속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지만 19세기 향시의 사례를 보면 도별로 100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백명에 이르는 증광문과 향시, 수천명에 이르는 정시 향시 응시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었다. 그 격차는 17세기 이래로 계속 벌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65]

식년문과 강경의 고득점자 증가와 관련해서는 응시자의 증가보다는 식년

61) 옥영정, 「17세기 개인출판의 四書諺解에 과한 고찰」, 『서지학연구』 27, 한국서지학회, 2004, 187-209면; 「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간본의 계통과 經書字復刊本의 형태서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2, 한국서지학회, 2005, 361-386면.

62) 박현순, 앞의 책, 2014, 46-61면.

63)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7월 22일(을유) "吳挺一 以吏曹言啓曰 (…) 今此式年 東堂擧子 錄名之數 比之別試 則不過十分之二三 至於館試 則應赴者僅五十人"

64)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11월 3일(계미) "端夏曰 舊時科儒 必以治經者 謂之實才 故臣少時見之 則講試觀光者 多矣 近來科式廢壞 人心躁競 以朝家專尙製述之故 東堂入門之數 不過數百 而庭試 方外實才外不文儒生 亦恥不能應擧"

65) 박현순, 앞의 책, 2014, 300면 〈표 3〉 19세기 문과 향시 응시자 수 참조.

문과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강경생・명경생의 존재가 더욱 주목된다. 이식(李植)은 노년에 손자들을 위해 과거공부를 위한 독서법을 저술하여 남겼는데, 그 가운데 『주역(周易)』의 경우 시강(試講)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정전(程傳)』까지 함께 공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점법(占法)만 배우고 익힐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였다. 이식은 강경에 응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공부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66] 당시 유생들 사이에는 강경과 제술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17세기 중반부터 평안도에서는 청북도회(淸北都會)를 운영하며 관내 유생들의 과거 준비를 지원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문과의 경우 식년문과만을 준비시켰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문풍이 뒤진 평안도에서는 식년문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문과 급제의 가능성을 높였던 것이다. 그 결과 평안도는 17세기 후반부터 여러 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할 수 있었고, 18세기부터는 식년문과 급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도(道)가 되었다.[67]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식년문과를 공략한 결과였다.

이런 경향은 17세기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영조대 초반부터는 강경생・명경생과 제술생이라는 구분이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영조대・정조대에는 과거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술생들, 특히 생원・진사에게 강경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강경제도들을 도입하기도 하였다.[68] 제술생들에게 강경을 익히게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이다.

인조대 후반 이후 강경 고득점자가 늘어나면서 강경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논의는 현종 5년(1664)에 이유태(李惟泰)가 올린 이른바 '기해봉사(己亥封事)'를 재검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유태는 당시의 강경이 구송(口誦)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문의(文義) 위주로 강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 자체는 그리 새삼스러울

66) 李植, 『澤堂集』 別集 권14, 「示兒孫等」(1642) "惟周易 業試講者 當竝讀程傳 不業者 只學占法 不必讀也 惟繫辭文言 一番讀誦可也"

67) 박현순, 앞의 책, 2014, 294-298면.

68) 박현순, 앞의 책, 2014, 145-158면; 「영조대 到記儒生殿講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 2013, 227-259면; 「정조의 日次殿講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109-144면.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문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의 강경하는 법은 전에는 뭇 경서 중에서 강하는 대문(大文)의 주석을 거의 다 강송하였기 때문에 문의(文義)를 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강보(講譜)'라고 칭하며 단지 약간의 훈고(訓誥)로 구두를 찍고 책임을 메운 후에 대문 한편을 외는데, 평가하는 사람도 이것을 통(通)이라고 합니다. 대문(大文)을 외는 것은 자못 쉽고 주석을 익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주석을 다 익히지 않으니 어떻게 문의(文義)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변통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옛날의 규칙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69]

정태화는 예전에는 대문의 주석까지 다 강송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이전에 강경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되었는지는 가늠하기는 어렵다. 대개는 구송(口誦)과 구두(句讀)의 문제를 비판하는 데 역점을 두어 구체적인 강경방식을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조대의 노인(魯認)은 중국인들에게 조선의 과거제도를 설명하며 주석도 함께 강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70] 문의(文義)를 강조하는 시점에서는 주석도 함께 강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태화의 제안은 구규(舊規)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조보(朝報)를 통해 공지되었다. 며칠 후 정태화는 스스로 주석을 다 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과거사목』에 수록할 때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이 조항은 『과거사목』에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조보(朝報)에 실려 그 내용이 전국으로 퍼져 나간 후의 일이었다.[71]

---

69)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0월 20일(무인) "李俊耉 以禮曹言啓曰 今十月十六日引見時 領議政鄭太和所啓 科擧講經之規 在前則凡經書中 所講大文之註 幾盡講誦 故亦可以曉解文義矣 今則應講之人 稱以講譜只以若干訓誥 點節塞責後 仍誦一篇大文 則考試之人 亦以此謂之通 蓋大文之誦頗易 而讀註甚難故也 本文注釋 旣不盡讀 則其何能及於文義乎 若欲變通 則必如古規 似當矣"

70) 魯認, 『錦溪集』 권3, 「華東科制」 "講生奉展讀盡音釋 然後章頭章下篇題雲峯雙峯大宋諸家輯註 盡數背講純通然後謂之明經科"

71) 『科擧謄錄』 제3책 022b 甲辰(1664) 10월 22일 "曹爲相考事 今十月十六日引見時領議政鄭□□所啓 近來講經 全昧文義 蓋由於徒務遍誦大文 而略其註 必記誦註文中解釋大文然後 方可通其旨義 舊規亦然 今若變通 則必如古規似當矣 上曰 科擧臨時 改定事目 可也 鄭□□曰 臨時分付則事涉急迫 來丙午年應講之士 必自今預講矣 上曰 自今講規復舊事 言于該曹事 傳敎敎是白置 道內各邑良中 以此意爲先知委爲乎矣 科擧事目則依領議政所啓 前頭科擧

그후 숙종 2년(1676) 이담명(李聃命)과 숙종 10년(1684) 민정중(閔鼎重)이 강경에서 주석을 제외하고 대문(大文)을 문의(文義) 위주로 평가하자고 제안한 것을 보면 당시에는 주석을 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2]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정약용(丁若鏞)은 강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갑자기 강희년간부터 강규(講規)가 엄해져서, 대주(大註)·소주(小註)·편제(篇題)·서사(序辭)를 배송하는 것이 전에 비해 3배가 되었다. 한글[土書]로 번역하는 것을 언해(諺解)라고 하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낙과(落科)시켰다."[73]

정약용은 강희년간부터 대주(大註), 소주(小註)까지 다 배송을 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희년간의 일은 현종 5년(1664)부터 주석(注釋)의 암송을 도입한 것을 가리킬 것이다. 이후 주석 암송이 일반화되었고, 정약용은 이것이 강희년간에 시작된 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배송해야 하는 양이 3배나 늘어났다면 응시자들의 강경 성적이 다소간 하락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강경 고득점자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인조대 후반 사관은 강경 10분이 넘어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74] 하지만 인조 26년(1648) 이민환(李民寏)은 아들 이정기(李廷機)가 강경에서 10분 반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술 성적이 없어도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강경 고득점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10분 반은 명경 급제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이다.[75]

그런데, 숙종 7년 영의정 김수항은 당시에는 15분·16분이 많아 13분·14분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76] 주석 배송의 도입과 상관

事目磨鍊時 自本曹 稟于廟堂 參酌定式後 亦當更爲行會 此意幷以知委 施行向事 事目磨鍊時議于大臣 勿爲添入"

72) 『승정원일기』 숙종 4년 4월 23일(임진);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10월 27일(기미)

73) 丁若鏞, 『經世遺表』 권15, 「春官修制」 科擧之規一 "忽自康熙年間 講規猝嚴 大註小註篇題序辭所背誦者 比古三倍 而土書詮譯 謂之諺解 一字微錯 便置落科"

74) 『인조실록』 권50, 인조 27년 3월 18일(정축)

75) 李民寏, 『紫巖集』 권2, 「答第三子廷機書」 "二十二日朝 奴來見書 審講得十分半 雖無生畫 可以參榜 況二日製述 豈無入格者乎"

76) 『과거등록』 제5책, 035b, 辛酉(1681, 숙종 7) 4월 25일 "領議政金壽恒曰 講經出杜高下 自有法典定式 而近來出杜太緩 至於十五畫十六畫者居多 十三四畫 或有見屈者"

없이 강경 고득점자는 더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숙종 7년과 숙종 10년 두 차례에 걸쳐 식년문과의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강경 고득점자와 강경 급제자가 늘어나는 한편으로 식년문과 급제자의 대다수가 지방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다.[77] 이에 대해 구송(口誦) 중심의 강경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경 급제자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급제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78]

견해는 크게 강경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제술을 강화하자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숙종 7년 논의를 제기한 이단하(李端夏)는 음석(音釋)만 평가하기 때문에 강획(講畫), 곧 강경의 분수가 과다하고 문의에는 어둡다고 비판하고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문의(文義) 위주로 강경을 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79]

이에 대해 이사명(李師命)·민정중(閔鼎重) 등은 오히려 강경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중장·종장의 제술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80] 숙종 10년 판부사 민정중(閔鼎重)은 정태화와 달리 원래는 강경이 정문(正文) 위주였기 때문에 강경 합격자가 많았고 중장·종장의 제술 성적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구규를 회복하여 주석(注釋) 암송을 제외하여 강경 합격자를 늘리고, 중장·종장의 제술로 당락을 가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81]

하지만 한동안 뜨겁게 진행되던 논의들은 식년문과 급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향유(鄕儒)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경국대전』의 강경 규정을 복구한다고 재천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82] 사실상 아무런

77) 식년문과 급제자의 거주지를 보면 명종대는 지방출신이 44.3%였으나 인조대 72.2%, 숙종대 84.4%로 계속 높아졌다. 반면 17세기 제술과의 경우 서울 출신이 증광문과 급제자의 66.3%, 정시·알성시 등 친림시 급제자의 79.3%를 차지하여 식년문과와 대비를 이룬다. 박현순, 앞의 책, 2014, 280-281면.

78) 자세한 논의는 차미희, 앞의 책, 1999, 103-116면 참조.

79) 『과거등록』 제5책, 028b, 辛酉(1681, 숙종 7) 정월 초4일 式年講規依大典講其文義添入科擧事目

80) 『과거등록』 제5책, 035b, 辛酉(1681, 숙종 7) 4월 25일 式年講經規式定奪

81) 『과거등록』 제9책, 076a, 甲子(1684, 숙종 10) 10월 14일 文科講經變通事病不收議前更議

82) 조좌호, 앞의 글, 1976, 34-35면; 차미희, 앞의 책, 1999, 103-116면.

조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강경 방식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명경과로의 성격 변화

숙종 초반 강경제도를 둘러싸고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 가운데 분정(分庭)이라는 새로운 관행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띈다. 숙종 10년 당시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은 중장·종장의 제술 때 우획(優畫)인 자들을 분정(分庭)하는 규정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혁파하고 강경과 제술의 성적을 합산하여 등위를 정할 것을 청했다.[83] 식년문과의 분정(分庭)에 대해서는 그 이전인 숙종 8년(1682)에도 동정(東庭)과 서정(西庭)으로 분정(分庭)한다고 언급한 사례가 보인다.[84]

분정(分庭)의 구체적인 모습은 숙종 34년의 사례에서 보인다. 여기서 분정이란 강경 합격자들이 중장·종장에서 제술 시험을 치를 때 강경 고득점자들은 시험장의 동정(東庭)에, 나머지는 시험장의 서정(西庭)에 앉아 따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동정에서 시험을 보는 고득점자는 제술 성적과 상관없이 합격이 결정된 경우이며, 서정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제술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가리는 경우였다.[85] 이 중 서정(西庭)의 제술 시험을 생획시(生劃試) 또는 생획과(生劃科)라고 불렀다.

숙종 34년(1708) 당시 동정(東庭)과 서정(西庭)으로 나누어 보내는 기준은 강경 14분이었으며, 급제가 확정되어 동정(東庭)에서 응시하는 인원은 강경 2개 시소에서 각 15-16명, 총 30-32명 정도였다. 강경에서 30-32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2명 혹은 2-3명을 중장·종장 제술후 강경성적과 합산하여 선발한 것이다.[86] 생획시는 사실상 명목만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초장

83)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10월 27일(기미) "領議政金壽恒以爲 (…) 例於中終製述之日 講畫之優者 有分庭之規矣 臣意則革去分庭之規 通融試製 出榜之際 竝與講畫生畫而計之 定其次第 則講畫之十四五分以上 必無見屈之理 而十二三分以下生畫之超升者 亦多有之"

84) 『승정원일기』 숙종 8년 10월 16일(기축) "禮曹判書南龍翼進曰 (…) 今此增廣會試 乃是製述之科 東西分庭之規 似難用之"

85)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윤3월 4일(신사) "行判中樞府事李頤命以爲 (…) 十四分以上 分送東庭 乃試場事例也"

강경에서 식년문과의 합격자가 결정되었다.

분정의 규정이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당초 강경 고득점자를 바로 급제시키는 관행이 있었던 데 비추어 보면 일찍부터 분정(分庭)이 관행화되었을 수도 있다.[87] 중요한 것은 그 시점보다는 강경분수로 급제가 인정되어 동정(東庭)에 입장하는 인원의 숫자이다. 이 인원이 적다면 『경국대전』처럼 중장·종장을 치른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많았을 것이다. 숙종 10년 민정중은 정확한 시점은 지목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생획시를 거쳐 급제하는 인원이 전체의 절반 정도였다고 언급하였다.[88] 그런데, 숙종 7년 김수항은 당시에는 15분·16분이 많아 13분·14분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89] 강경 15분은 위격이라도 급제시키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즈음에는 상당부분이 강경 합격자로 채워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숙종 34년에는 강경급제의 기준은 14분, 인원은 30-32명으로 관행화되어 있었다. 15분에서 14분으로 기준을 낮춘 것은 아예 강경급제의 인원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늦어도 숙종 34년 이전에 식년문과는 강경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명경과로 성격이 변해 있었다.

식년문과를 '명경과'로 칭하거나 식년문과 급제자를 '명경급제'로 칭한 사례는 이미 17세기 초반부터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강경 통과자가 많지 않아 결과적으로 강경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숙종대에는 강경 고득점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아예 강경 성적만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도록 선발법이 바뀌어 있었다. 문과를 제술과와 명경과로 이분하고, 식년문과를 칭하는 사례는 숙종 초반부터 등장한다.[90] 식년문과 회시의 선발법이

86)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윤3월 4일(신사) "禮曹啓曰 講經後覆試之規 例以兩所多劃者 各十五六人 送于東庭 其餘送于西庭 取其製述劃數 以充其一二空額矣"

87) 조좌호는 초장 講畫의 다과에 따라 分庭하는 것이 회시의 관례였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런 관례가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조좌호, 앞의 글, 1976, 34면.

88) 『승정원일기』 숙종 10년 10월 27일(기미)

89) 『과거등록』 제5책, 035b, 辛酉(1681, 숙종7)

90) 『승정원일기』 숙종 2년 4월 22일(갑술) "大運熙曰 (…) 若罷此 則明經科 尤爲不實矣 製述科 亦多有之"; 『승정원일기』 숙종 3년 8월 4일(무신) "順天府使安後泰 (…) 對曰 臣以丙午明經科 由承文參下";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0월 10일(을미) "同經筵李端夏言 近來科規大誤 明經科則大典云 融通文義者與通牲 而今則只取音釋句讀 不問文義 故得十六分者 不能爲書札"

3장 통고 방식에서 초장 강경에 의한 선발로 바뀐 것도 이즈음일 것이다.

시관들은 강경급제자를 선발할 때 인원과 분수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했다. 2개의 시소에서 각각 14분 이상 15-16명씩을 선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14분 이상이 선발인원을 넘게 되면 급제 인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실제로 숙종 3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해 강경 때 14분 이상을 받은 인원은 1소 25명, 2소 16명으로 총 41명이었다. 관례에 따라 14분 이상의 급제를 인정한다면 식년시 선발인원 33명을 8명이나 초과하게 된다. 이 때는 임시적으로 15분 이상 27인에게만 급제를 인정하고 14분 이하는 중장·종장을 치르고 제술 성적을 합산하여 나머지 인원을 선발하게 하였다.[91] 그 결과 6명이 강경 14분을 받고 낙방하였다. 이는 전례없는 일로 응시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인식되었다.[92] 14분이면 급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시관들이 적절하게 분수와 인원을 안배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조 23년 정석오(鄭錫五)는 기준 분수를 조정했던 사례로 15분이었던 숙종 34년과 13분 반이었던 숙종 37년의 사례를 들었다.[93] 두 사례는 30여년이 지나서도 기억되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대개는 시관들의 안배에 의해 14분 30-32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강경 급제의 기준 분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다가 영조대 중반 즈음에 강경 14분은 급제를 인정한다는 정식을 세웠다.[94]

---

91)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윤 3월 4일(신사)

92)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윤3월 25일(임인) "李正臣曰 (…) 夫明經之科 異於製述之科 平生積工 非其罪而見拔 則豈非至冤乎 今番十四分見屈者 一所四人 二所二人 此皆前所未有之事 無非冤痛"

93)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3월 7일(정유) "左議政鄭錫五箚曰 (…) 故入格者多 則雖十四分以下 皆送西庭 入格者少 則十三分半 亦屬東庭 臨時分排 一隨講畫人之多寡 元無執一之規 先朝戊子(1708, 숙종 34)辛卯(1711, 숙종 37) 可以監矣"

94)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0월 9일(경인) "上曰 幾分以上直付殿試乎 尙重曰 古則十四分以上少 則雖十三分半者 陞付殿試 十四分以上多 則雖十四分者 不得付殿試矣 近來新定試 十四分以上 一併賜第 十三分半以下 皆赴生畫矣"

강경은 제술과 달리 한 사람씩 강경을 할 때마다 성적이 바로 확정되었다. 강경이 끝나면 응시자가 자신의 강지(講紙)에 기록된 성적을 확인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시관들이 사후에 성적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런 여건에서는 14분 이상이 선발인원을 채우고 나면 강경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14분 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정조는 즉위 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14분은 다시 비교를 통해 급제자를 선발한다는 정식을 마련하였다. 시소별로 14분 이상이 선발인원 16명을 넘으면 14분 반 이상은 바로 급제를 인정해주고, 14분의 동점자들은 사서삼경 중 한 책으로 다시 강경하여 등위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을 '비교(比較)'라고 일컬었다. 비교 강경의 서적은 난이도에 따라 『주역(周易)』, 『서전(書傳)』, 『시전(詩傳)』, 『맹자(孟子)』 순으로 정했다.[95] 이에 따라 선발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14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조 1년 강경 1소에서는 강경이 채 끝나기 전에 16분 2명, 15분 6명, 14분 반 1명, 14분 9명 등 14분 이상이 18명 배출되었다. 새로운 정식에 따라 14분 반 이상 9명은 강경 급제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7명은 14분 득점자들을 재강하여 선발하였다. 이후의 사례를 보면 정조 7년에는 21명, 정조 22년에는 17명이 14분을 받아 이 비교에 들었다.[96] 비교에서 낙방한 응시자는 다시 중장·종장의 제술시험에서 13분 반 이하의 응시자들과 함께 생획과에 응시하였다. 정조 7년(1783) 생획과는 한 자리였는데, 14분 비교에서 떨어진 인원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응시하였다.[97]

---

95) 『승정원일기』 정조 1년 9월 21일(계미) "徐有防 以式年文科覆試講經一所應辦官 以試所意啓曰 臣等來詣試所 得伏見禮曹移關 則今七月十一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上曰 至於會講 則先入應講者 已滿入格之額數 則其下雖能通七書 自在落科 此豈盡才取人之道乎 自今以後 應講能通者 勿拘多寡 隨出隨抄 更爲比較以塡其數爲好事 傳敎矣 臣等 依聖敎奉行 自十五日開講 至于今日 姑未畢講 未應講者 尙餘十餘人 而講生入格者十六分二人 十五分六人 十四分半一人 十四分九人 比原定額十六人之數 已爲過額 畢講之後 當以十四分人更爲比較 以準原額而比較之規 當初傳敎中 旣無指一下敎矣 較講冊子七書中 以何書爲之乎 比較之後 如有同劃者則又當比較 而所講之書 仍以較講之冊爲之乎 事係科制 有非臣等所可擅便 何以爲之 敢稟 傳曰 初以周易比較如又比較 則以書傳比較 又有同劃 則以詩傳孟子 以次比較 此後依此定式"

96) 『승정원일기』 정조 7년 10월 14일(임신)

97) 『승정원일기』 정조 7년 10월 12일(경오);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3월 6일(경오). 조좌호는 숙종 34년과 정조 22년의 사례를 근거로 영조·정조대에는 강경 합격자가 회시 합격자 33인을 초과하는

정조대 편찬된『전률통보』에는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 강(講)은 14분 이상을 선발한다. 입격자가 선발인원[원액(元額)]을 채우지 못하면 —양소(兩所) 각 16명, 합 32명이 원액(元額)이다—, 생획으로 —13분 이하의 연획(連畫)으로 입격하지 못한 자를 제술로 시험하는 것을 생획(生畫)이라고 한다— 입격자의 다과에 따라 액수를 채운다. 선발인원을 채우면 생획으로 1명을 뽑는다. 선발인원을 초과하면 14분을 비교하여 선발인원 수만큼 뽑고, 비교에서 떨어진 자는 생획(生畫)에 응시한다.[98]

강경 비교를 도입한 후에도 강경 14분 이상으로 30-32명을 선발한다는 관행에는 변함이 없었다.『전률통보』에서는 아예 그 인원을 32명으로 명시하였다. 간혹 분수의 분포나 득점자의 인원 수에 따라 비교나 생획의 선발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99] 그러나 32명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종대 편찬된『육전조례(六典條例)』에도 강경 급제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전률통보』와는 차이가 있다.『육전조례』에서는 14분 반 이상을 우획(優畫)으로 칭하고 양소(兩所)에서 우획(優畫)인 16명씩을 선발하고, 14분 이하는 생획시에 응시하여 1인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 때는 정조대에 도입한 14분의 비교가 사라지고 양소에서 14분 반 이상으로 16명씩을 선발하고, 생획시에서 1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100] 14분과 14분 반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숙종대의 방식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왜 끝까지 생획과 한 자리를 남겨 두었는가 하는 것이다. 영조 23년 영의정 김재로는 중장·종장에 제술을 시행하는 것이『경국대전』의 법제이며, 아무리 강경 고득점자가 많더라도 1-2자리는 반드시

일이 많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숙종 34년의 일은 일종의 사고로 파악되며, 정조 22년의 사례는 선발 방식이 달라진 결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조좌호, 앞의 글, 1976, 34면 참조.

98)『典律通補』禮典 諸科 式年文科 "講 取十四分以上 而元入格未滿額-兩所各十六 合三十二人爲元額 - 則以生畫 - 十三分半以下 連畫而未入格者 試製 謂生畫 - 隨元入格多寡充額 數已滿額 則生畫取一人 或過額 則以十四分比較 以取元額之數 而比較見落人 亦赴生畫[補]"

99)『승정원일기』정조 22년 3월 6일(경오)

100)『六典條例』卷5 禮典 禮曹 稽制司 科擧 式年大比諸科 "文科 (…) 覆試初場 分兩所 試講 - (…) 十四分半以上 爲優畫 - 各取十六人 (…) 中場終場 講畢後 間一日 單所設行 - (…) 兩所優畫者三十二人及十四分以下人 竝試 十四分以下人中 取一人 與優畫人 分等出榜-"

생획과로 남겨두어야 식년문과의 법의(法意)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01] 생획과 자체는 그다지 실효성이 있는 시험은 아니었지만 생획과가 없어지면 식년문과의 이념 자체가 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생획과는 식년문과의 이념적 상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5. 맺음말

조선초기 식년문과는 강경과 제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이상 하에 기획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문과가 명경과와 제술과로 이원화되며 식년문과는 '명경과(明經科)'로 인식되었다.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일컬어진 데에는 식년문과가 경서의 암송 위주 시험이며, 제술 위주의 별시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에 식년문과가 왜 명경과로 인식되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식년문과의 채점·선발법과 운영의 실제를 통해 식년문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식년문과 회시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초장의 강경에서 모든 과목을 조(粗) 이상의 등급으로 통과해야만 중장·종장의 제술에 응시할 수 있었다. 초장은 사실상 응시자격 시험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중장·종장의 제술 후에 초장·중장·종장의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여기에는 강경을 기본으로 제술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식년문과의 이상이 담겨 있다.

그런데, 중종대 이후에는 초장의 강경 시험 통과자가 선발인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중장·종장의 제술 시험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중장·종장에서 낙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장 강경만 통과하면 문과 급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17세기 초반에는 식년문과 급제를 '명경급제(明經及第)'라고 칭하는 사례들이 나타나 식년문과가 강경을 통해 선발하는 시험으로 인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101)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3월 7일(정유)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졌다.

인조대에는 중종대와 달리 초장 강경의 고득점자가 늘어났다. 따라서 강경 통과자가 늘어나 중장·종장의 제술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즈음에는 강경 고득점자는 중장·종장의 제술 시험에서 분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급제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다. 강경 고득점자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식년문과에서 강경 급제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강경급제 인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숙종 34년 즈음에는 아예 강경 14분 이상 30-32명을 선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중종대에는 강경통과자가 적어 결과적으로 강경 통과가 문과 급제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 때는 아예 강경으로만 30-32명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식년문과가 명경과로 그 성격이 전환된 것이다.

법제상 식년문과는 여전히 초장 강경과 중장·종장 제술의 성적을 합산하여 급제자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하지만『전률통보』,『육전조례』등에는 강경 선발의 원칙이 시행 지침으로 공식화되어 있었다.

식년문과가 강경에 의한 선발로 전환됨에 따라 문과는 강경 위주의 명경과와 제술 위주의 제술과로 이원화되었다. 유생들은 명경과와 제술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준비하였는데, 명경과보다는 제술과를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식년문과의 위상은 갈수록 낮아졌고, 영조대와 정조대에는 제술생들의 강경 교육 문제가 교육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 참고문헌

원전자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
『經國大典』
『六典條例』
『典律通補』(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國朝榜目』(奎貴11655-v.1-12)
『科擧謄錄』(奎12909-v.1-14)
[이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
魯 認, 『錦溪集』
李民宬, 『紫巖集』
李廷馣, 『四留齋集』
李浚慶, 『東皐遺稿』
李恒福, 『白沙集』
申光漢, 『企齋集』
申 欽, 『象村稿』
吳允謙, 『楸灘集』
丁若鏞, 『經世遺表』
趙 翼, 『浦渚集』
崔 岦, 『簡易集』
[이상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柳希春, 『眉巖日記草』, 潭陽鄕土文化硏究會, 1996.
柳希春, 『眉巖日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연구논저

강민구, 「조선 시대의 懸吐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85, 동방한문학회, 2020.
金敬容, 「조선조 과거제도 講書試券 연구」,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_____, 「조선조 과거제도 시행과정의 탐색—식년시 문과와 생진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5(1), 교육사학회, 2015.
박연호, 「조선초기 교육의 목표와 講製是非」, 『교육사학연구』 4, 교육사학회, 1992.
박용운,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연구』, 일지사, 1990.
朴天圭, 「文科 初場 講製是非考—鮮初 科擧制度의 成立過程에 관한 一考察—」, 『東洋學』 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6.
박현순, 「영조대 到記儒生殿講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 2013.
_____, 『조선후기의 과거(科擧)』, 소명출판, 2014.
_____, 「정조의 日次殿講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옥영정,「17세기 개인출판의 四書諺解에 과한 고찰」,『서지학연구』27, 한국서지학회, 2004.
_____,「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간본의 계통과 經書字復刊本의 형태서지적 분석을 중심으로—」,『서지학연구』32, 한국서지학회, 2005.
정지연,「조선 초기 문과 강경과목 연구」,『교육사학연구』20, 교육사학회, 2010.
曺佐鎬,「李朝式年文科考(上)」,『大東文化硏究』1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5.
(조좌호,『韓國科學制度史硏究』, 범우사, 1996 수록)
_____,「李朝式年文科考(下)」,『大東文化硏究』1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6.
(조좌호,『韓國科學制度史硏究』, 범우사, 1996 수록)
차미희,『朝鮮時代文科制度硏究』, 국학자료원, 1999.
허흥식,『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Abstract】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Regular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Joseon Dynasty

Park, Hyun Soon*

Reorganizing the literary examination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the Joseon Dynasty instituted its peculiar regular civil service examination that incorporated both the oral and writing test at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By the reign of King Sukjong, howeve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divided into myeonggyeonggwa, the oral test, and jesulgwa, the composition test. At the same time, the regular exam became regarded as myeonggyeonggwa and devalued. This study examines such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r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second stage of the regular civil service exam was evaluated by adding up the scores of all three rounds. But only by passing the oral test of the first round could one proceed to the second and third round composition tests. The oral test of the first round served as a qualifying exam. Since the reign of King Jungjong, as the number of passers for the first round oral test decreased to 30-40 people, passing the oral test itself led directly to success in the examination. Furthermore, there appeared a practice where those with superior grades on the oral test were accepted regardless of their scores on the composition test.

By the late era of King Injo, the number of high scorers in the oral test had increased. Accordingly, most passers of the regular civil service examination were filled with those high scorers in the oral test. And by the reign of King Sukjong, the practice of selecting 31 to 32 candidates through the oral test and only the rest - 1 to 2 - through the written test was settled. As a result, the regular examination was largely considered myeonggyeonggwa, and the civil service exam was divided into myeonggyeonggwa and jesulgwa.

* H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

As the candidates preferred jesulgwa to myeonggyeonggwa, the regular civil service examination status diminished over time. In the reign of King Youngjo and Jeongjo, the issue of educating students in literary composition with oral test skills was one of the pending issues in their education policies.

Keywords: civil service examination, regular civil service examination, myeonggyeonggwa—the oral test, jesulgwa—the composition test.

접수일: 2022.09.30.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14.